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70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개정이유

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신설 및 시정의 성주류화 정책 확산 등을 반영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위원 구성,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성평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함
(안 제7조제3항)
- 나. 성평등위원회의 “성주류화, 정책개발,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”를 개편하여 “교육·문화, 노동·돌봄,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”로 변경하고,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12조 제2항 및 제3항)
- 다.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13조제2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 (2019. 3. 21. ~ 4. 10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공무원 7명”을 “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”으로 하고, “풍부한 자”를 “풍부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중 “성주류화 분과위원회, 정책개발 분과위원회,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”를 “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,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,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: 성평등 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: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정책,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 :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협의”를 “협의(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평가, 환류 및 보고서 작성”을 “평가 및 환류”로

한다.

1.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

제36조 중 “같은 법 제53조의2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7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·경제·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<u>풍부한 자</u>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1항의 분과회의는 <u>성주류화 분과위원회, 정책개발 분과위원회,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</u>로 하고,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<u>성주류화 분과위원회</u> : 성인지예</p> | <p>③ 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0명</u> ----- ----- ----- <u>풍부한 사람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,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,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</u>: <u>성평등</u>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<u>산,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정책개발 분과위원회 : 보육, 일자리, 안전,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 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: 조례의 제·개정, 정책,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</u></p> <p>2. <u>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</u></p> <p>3. <u>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, 환류 및 보고서 작성</u>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| <p><u>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: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정책,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 :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</u></p> <p>2. ----- -----<u>협의(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)</u></p> <p>3. -----<u>평가 및 환류</u>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3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2 및 <u>같은 법 제53조의2</u>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3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----- ----- -----「지방회계법」 <u>제18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|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-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여성정책담당관 정인에 주무관(2133-5028)